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응급처치 범위(안 제11조의2)

나.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범위 및 방법 등(안 제25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응급처치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3의 제1호와 같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3의 제2호와 같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3의 제3호와 같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7항) 중 “다른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및 제3항에 따른”을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제25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2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의2제1항”을 “법 제23조의3제1항”으로 하며,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범위 및 방법 등) ① 구급대원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대규모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
2.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소방청장이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급대원은 감염병환자등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등 또는 그 밖의 의료기관 및 격리시설에 이송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구급대원이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을 이송하는 경우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 전단 중 “법 제23조의2제1항”을 “법 제23조의3제1항”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구급대원의 업무범위(제11조의2 관련)

1. 간호사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1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2. 1급 응급구조사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1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3. 2급 응급구조사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2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2(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응급처치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u> <u>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3의 제1호와 같다.</u> <u>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3의 제2호와 같다.</u> <u>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3의 제3호와 같다.</u> <u>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현장 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건복지</u>		

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응급환자의 이송 등) ①
(생 략)

②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
별 응급처치 범위 등 현장응급
처치 표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 지침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에 적합하고 최단시간에 이송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구급대원은 이송하려는 응급 환자가 감염병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군·구 보건소의 관계 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현
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및 제3항
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응급환자의 이송 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제2항

④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⑥ _____ 따른 _____

<신 설>

제25조의2(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범위 및 방법 등) ① 구급대원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염병환자등의 이송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대규모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

2.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소방청장이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급대원은 감염병환자등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등 또는 그 밖의 의료기관 및 격리시설에 이송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구급대원이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을 이송하는 경우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적절한 조

제25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대상 및 통보 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과 관련된 감염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 3. (생략)
- ② ~ ④ (생략)

제26조(감염관리대책) ①·② (생략)

③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등은 유해물질등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촉일부터 15일 동안 구조·구급대원의 감

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장비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5조의3(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대상 및 통보 방법 등) ① -----

법 제23조의3제1항-----

-----.

1. ~ 3.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감염관리대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3조의3제1항-----

염성 질병 발병 여부를 추적·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복
기가 긴 질환에 대해서는 잠복
기를 고려하여 추적·관리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생 략)

-----.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119구급과	
연 락 처	(044) 205 - 7632